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의거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를 다음과 같이 입주 및 분양공고 합니다.

2022. 06. 30

코리아신타(주) 외 2개사

1 일반 공급대상 토지 및 공급금액

번호	블록명		면적(㎡)	분양금액(원)	입주업종
1	1	- 1	7,221	4,543,453,200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2	2	- 1	26,541	15,093,866,700	
3	3	- 1	5,228	3,289,457,600	
4		- 2	6,079	3,824,906,800	
5		- 3	7,465	4,696,978,000	
6	4	- 1	47,842	28,654,965,900	
7	5	- 1	6,612	3,560,231,400	C24 1차금속 제조업
8		- 2	1,916	1,031,670,20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9		- 3	5,704	3,588,956,800	
10		-4-1	1,984	1,068,284,800	
11		-4-2	1,851	1,164,649,200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12		- 5	5,138	3,232,829,600	
13		-6-1	1,653	890,057,850	
14		-6-2	2,780	1,496,891,000	C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5		-7-1	2,199	1,184,051,550	
16		-7-2	2,199	1,383,610,800	
17		-8-1	2,644	1,423,661,800	C28 전기장비 제조업
18		-8-2	1,718	925,057,100	
19		-9-1	1,653	890,057,850	
20		-9-2	1,874	1,009,055,30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	8	- 3	22,141	13,931,117,200	
22	9	- 1	19,963	10,749,077,350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23	10	- 1	33,039	20,788,138,800	
24		- 2	17,046	10,725,343,200	
25	11		14,993	8,526,519,100	
26	12		15,013	8,537,893,100	
27	13	- 1	3,240	2,038,608,000	

번호	블록명	면적(㎡)	분양금액(원)	입주업종
28	6	- 1	29,466,404,000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9		- 2	14,383,239,750	
30	7	- 1	44,203,780,500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31	8	- 1	29,466,404,000	
32		- 2	22,986,884,250	

구 분		우선공급면적	일반공급면적	예정조성원가	공급방법
산업 시설 용지	생산시설용지	149,385㎡	116,351㎡	650,899/㎡	입주 대상자 순위에 따라 결정
	물류시설용지	201,950㎡	-		
소 계		351,335㎡	116,351㎡		

※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예정분양가 임.

※ 생산시설용지 : 건폐율 70%, 용적률 300%, 최고높이 25 ~ 30m 이하

※ 물류시설용지 : 건폐율 70%, 용적률 300%, 최고높이 60m이하

※ 상세공급 대상 토지는 [별첨1]분양공고조서, [별첨5]분양공급 토지이용계획도 참조

※ 분양대상자가 없을 경우 잔여필지는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됨.

2 입주신청자격

- 우선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김해시와 입주협약 또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업체
- 일반공급 :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 이외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6조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의거하여 김해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가능업종

구 분	입주가능업종
생산시설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물류시설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업종별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번호로 통계청 인터넷홈페이지 통계표준분류(표준산업분류) 참고

4 입주제한업종

- 「물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취수장(탄성 강변여과수)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 지역은 폐수 배출시설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수도법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 시설과 같은 법 제32조 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함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 표면처리시설,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 입주신청방법

-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분양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면적 단위는 블록 내 분할된 1필지를 최소로 하고, **복수필지 신청 시 각 필지에 대한 신청예약금 납부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1.분양공고조서, 별첨2.분양공급토지이용계획도 참조)
- 입주신청접수 이전에 신청예약금을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공고된 기간 내에 김해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홍보관홈페이지(www.sanupdanji.com)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및 열람 자료를 참조하여 입주선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시 예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 및 분양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작성오류, 등은 입주대상자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및 입주계약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접수장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테크노밸리로 25-7 루이스빌딩 301호
김해사이언스파크 홍보관 사무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이나 우편 접수 불가)

6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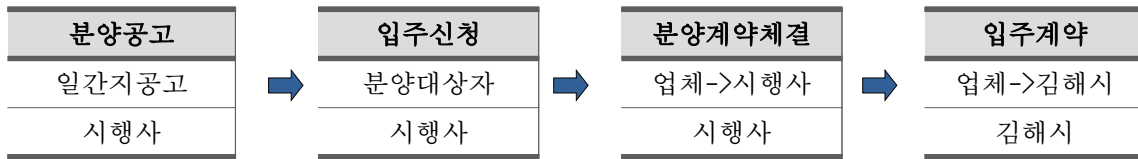
- 신청예약금은 신청자 본인명의(법인기업은 법인명, 개인기업은 대표자)로 아래 납부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첨부하여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의 신청예약금은 추첨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 접수 시 제출한 환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신청예약금 환불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환불계좌의 오류, 착오기재 등으로 인한 환급 지연 시에도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입주대상자로 선정 후 계약체결기간 내에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신청예약금 금액 및 납부계좌]

구분	신청예약금	납부계좌
생산시설용지	1,000만원	기업은행 738-001922-01-091 (예금주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물류시설용지	10,000만원	

7 분양절차 및 공급일정

○ 분양절차



○ 공급일정

구 분	공 급 일 정
분양공고(일간지, 팩트리온홈페이지)	2022. 06. 30. ~ 2022. 07. 14.
신청예약금 납부 (코리아신타크 주식회사)	
입주신청 (사업시행사)	
입주심의 (김해시)	2022. 07. 15.
입주대상자 선정 (추첨포함)	2022. 07. 18.
용지매매계약 체결 (사업시행사)	2022. 07. 19. ~ 2022. 07. 20.
입주계약 체결 (김해시 투자유치과)	

※ 상기 일정은 영업일 기준 10시~16시까지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입주대상자 결정방법

1순위 : 김해시와 입주협약 또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업체, 분양공고일 이전 까지 사업시행자와 입주확약 및 청약을 체결한 업체

2순위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 의거하여 다음 호에 각각 해당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호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7호 공장 및 부대시설
-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에 한함)
- 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입주기업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시설

- ※ 추첨대상자는 추첨일 전일까지 개별 통보하며 추첨 미 참가자는 입주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신청예약금은 당사로 귀속 됨. 또한, 차 순위자가 있을 경우 입주심사 후 계약 체결 함
- ※ 상기 2순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의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우선적으로 선정함
- ※ 우선순위의 적용은 해당 순위 동순위의 경우, 차 순위가 적용되며 2순위까지 동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함

9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량
공통	• 입주자신청서(첨부서식), 신청예약금 입금증, 통장사본	각 1부
	• 공장등록증명원(분양공고 이전 등록업체에 한함)	1부
	• 공동대표자 신청 시 대표자 선임계(공동신청자)	1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식	1부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2부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첨부)	
	• 입주 우대자격 증빙서류	
개인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각 1부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일 1개월 이내 원본으로 제출하고, 상기 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필요서류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 임

10 분양대금 납부방법

납 부 방 법	납 부 기 간
계약금 : 10%	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납부 후 계약 체결)
1차 중도금 : 15%	용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 소요 응당일
2차 중도금 : 15%	1차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개월 소요 응당일
3차 중도금 : 15%	2차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개월 소요 응당일
4차 중도금 : 15%	3차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개월 소요 응당일
5차 중도금 : 15%	4차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개월 소요 응당일
잔 금 : 15%	소유권 이전시 또는 준공전 토지사용시

※ 분양대금 납부 지정일은 분양(용지매매)계약 체결 시 별도 안내 및 명시할 예정

※ 금회분양 이후 계약자는 금회 분양계약자의 납부시기와 동일하게 중도금(누계기준)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함.

○ 선납 할인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약정일 이전에 선납부할 경우 선납금에 대하여 연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잔금에서 정산합니다.

○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납부 약정 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

간 동안의 일수만큼 연 12.0%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중도금 대출

- 코리아신탁(주), 이케이인더스트리(주), 이코리아산업(주)와 제1금융권 중소기업은행은 토지대금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추천서를 발급받아 분양대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와 대출이자는 입주대상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면적 및 가격정산

- 공급면적은 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합니다.
-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단가)은 사업 준공 전의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 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3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 토지사용 가능일은 분양계약 체결 이후 조성공사 및 기반시설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축착공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시기를 통보하는 날로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13조에 의하여 잔금 지급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착공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타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등침하에 따른 단지 계획고 정리 등은 분양계약자가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 준공 인가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사업 준공 인가는 인·허가 절차로 공사 준공과는 별개로 공사 준공 이후에 가능하며 사업 준공 시기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공사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14 처분제한

- 산업시설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년 이내 임의처분이 제한됩니다.
- 분양받은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 입주계약이 해지되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입주계약 체결 후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가 준공 후로부터 2년 이내 공장착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체결이 해지되며 가격을 지급하고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① 공급 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등은 입주 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② 본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정의 입주를 제한할 계획임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 폐수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별 발생하는 폐수는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③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김해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설계도면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지방자치 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④ 분양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토질조사를 하여 당해 부지 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 잔류 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처리방안 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 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분양자에게 있습니다.

- 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 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 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 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⑥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 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⑧ 토지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⑨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 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 하고, 단지 조성 시 우수처리 및 계획과 확보를 위한 일부 분양용지의 경우 분양면적 내에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 ⑩ 통신, 전력, 용수, 등은 산업단지 내로 공급될 예정이나, 각 기반시설 간선망에서 개별 필지로 인입은 분양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⑪ 잔금 납부통보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분양자가 전액 부담하

여야 하며, 분양자가 잔금 납부통보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토지사용 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 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분양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⑫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⑬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양자가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⑭ 입주업체는 소각대상 폐기물 발생 시 관련처리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16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공급자(매도자)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탁(주)(이하 “갑” 이라 한다),시행위탁자 이케이인더스트리(주)(이하 “병” 이라한다) 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신탁 계약” 이라 함) 이 체결되어 있음을 매수인(이하 “을” 이라한다) 은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1) “갑” 은 분양공급자(매도자)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병” 에게 있음을 “을” 은 인지함.

(2) “을” 은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갑”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 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갑” 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갑” 과 “병” 의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일부 필지의 소유권이 “갑” 에서 “을” 로 이전된 경우, 해당 이전된 필지를 포함함) 와 동시에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이케이인더스트리(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소유권 이전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의무 포함)

(4)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갑” 은 분양공급자(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무(공급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의무,소유권이전관련 업무 입주지연 지체상금,하자보수책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동의무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병” 이 부담한다.

- (5) 시공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당초 도급계약에 따라 “병” 과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에게 있다.
- (6) 분양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 (7) “갑” 은 신탁계약에 의거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신탁재산 범위 내) 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한다.
- (8) 공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갑” 의 분양대금반환 의무 등은 현존하는 신탁계좌의 잔액범위 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갑” 의 고유계정에 속하는 재산으로 위 의무를 하지 아니한다.
- (9) 코리아신탁(주)의 사전승인 없이 , 위탁자 이케이인더스트리(주)와 매수인(“을”) 간에 “별도의 특약” 이 설정된 경우 , 해당 특약은 코리아신탁(주) 에 대해서는 일체의 효력이 없다.
- (10) 본 조의 내용은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11) 본 목적물은 위탁자와 수탁자 코리아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코리아신탁(주)가 공급하는 건으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요청 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 해지되는 경우, 코리아신탁(주)로부터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인 지위가 이전되며, 이에 대해 매수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 (12)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해제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1 : 코리아신탁(주) 02-3430-2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사업시행자2 : 이케이인더스트리(주) 055-346-7020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03-11

○ 분양대행사 : (주)새날 1668-1886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90, 센트럴에이스타워 B 912호

2022. 06. 29.

코리아신탁(주) 외 2개사

[별첨 1]

분양공고조서

블록번호		공급면적 (㎡)	공급구분	입주가능업종	비고
1	1	7,221	일반공급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분할가능
2	1	26,541	우선공급		
3	1	5,228	일반공급		분할, 합병가능
	2	6,079	일반공급		분할, 합병가능
	3	7,465	일반공급		분할, 합병가능
4	1	47,842	우선공급		
5	1	6,612	우선공급		
	2	1,916	우선공급		
	3	5,704	일반공급		분할가능
	4-1	1,984	우선공급		
	4-2	1,851	일반공급		분할, 합병가능
	5	5,138	일반공급		분할, 합병가능
	6-1	1,653	우선공급		
	6-2	2,780	우선공급		
	7-1	2,199	우선공급		
	7-2	2,199	일반공급		분할불가
	8-1	2,644	우선공급		
	8-2	1,718	우선공급		
	9-1	1,653	우선공급		
	9-2	1,874	우선공급		
6	1	42,352	우선공급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2	20,673	우선공급		
7	1	63,534	우선공급		
8	1	42,352	우선공급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C27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D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	33,039	우선공급		
	3	22,141	일반공급		분할가능
9	1	19,963	우선공급		
10	1	33,039	일반공급		분할가능
	2	17,046	일반공급		분할가능
11	1	14,993	우선공급		
12	1	15,013	우선공급		
13	1	3,240	일반공급		분할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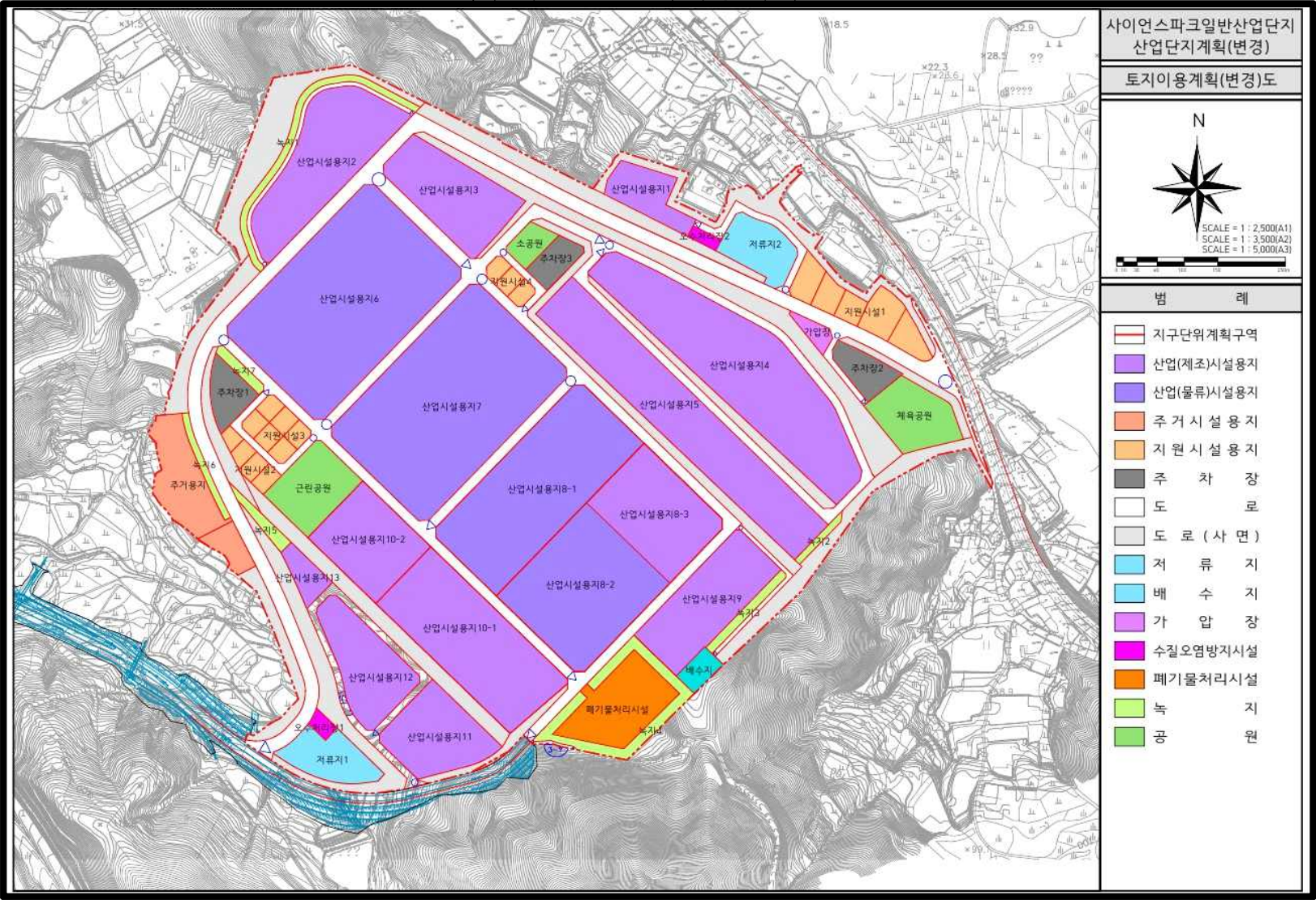
[별첨 2]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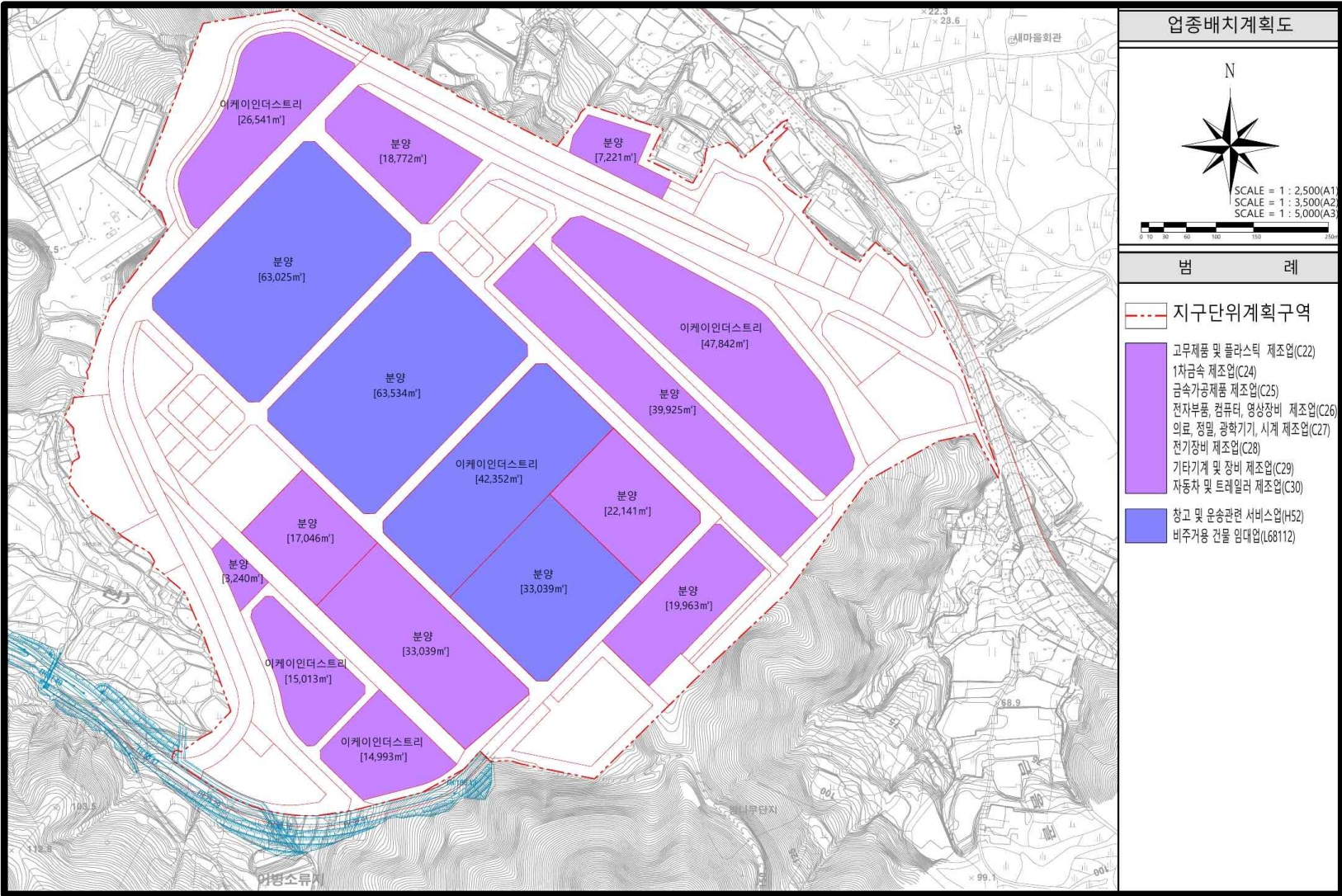


[별첨 3]

세부시설별 토지이용계획도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분양공급토지이용계획도

